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34
----------	-------

발의연월일 : 2021. 7. 9.

발 의 자 : 변재일 · 장철민 · 정정순
이정문 · 권인숙 · 권칠승
인재근 · 이장섭 · 강훈식
신동근 · 도종환 · 양경숙
임호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 징수 권한을 각각 시·도지사와 한국환경공단 에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은 시·도지사가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70%를 교부받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는 한국환경공단이 교부받도록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은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활폐기물과 동일

하게 시·도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할 때 배출 시·도를 벗어나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해당 지역의 환경 피해를 고려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1조).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비용을”을 “비용과 시·도를 이동하여 처리되는 폐기물로 인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도에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처분한 시·도에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 ② (생 략)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u>비용을</u>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 ----- ----- -----비용과 시·도를 이 동하여 처리되는 폐기물로 인 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 도에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u>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u>	⑧ ----- ----- ----- ----- -----위탁할 수 있다.

⑨ (생 략) <u><신 설></u>	⑨ (현행과 같음) <u>⑩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처 분한 시·도에 교부하여야 한 다.</u>
---------------------------------------	--